

■ 기본 서류 [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1.12.29)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유형	필수	해당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출 확인
○			해외체결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90일, 연간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불가	□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모두)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모두)	□
	○		출입국사실 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출확인
제3차대라인신청시 추가제출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대리인 지참	□
부적격통보를받은자	해당주택에대한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